



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

[시행 2021. 9. 1.] [국립농업과학원고시 제2021-1호, 2021. 9. 1., 제정]

국립농업과학원(잔류화학평가과), 063-238-3357

제1조 (목적) 이 고시는 「비료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0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모집단 편성 기준) 검사 모집단은 모선별, 생산일자별, 국내 도착일자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편성한다.

제3조 (시료 채취기준) ①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를 위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.

1. 시료의 추출대수는 동일 모집단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가. 포장물(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은 것)인 경우 8개 포장 이상. 다만, 8개 포장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
 - 나. 산물(비료를 용기나 포장에 넣지 않은 것)인 경우 8개소 부위 이상
2. 시료의 채취는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, 고상의 경우에는 혼합하여 500g 정도 채취하고,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든 후 500ml 정도 채취한다.
3. 채취한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나누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 봉투에 각각 넣어 봉합하고 검사공무원과 입회자(수입업자 또는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)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.
4.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한다.

제4조 (시료의 관리) ① 제3조에 따라 채취한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에서 보관한다.

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조 (분석기관)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분석기관은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의 장은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한다.

③ 시료의 분석 및 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제6조를 따른다.

제6조 (재검사) ①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입업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재검사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4조에 따른 보관용 시료로 한다. 다만, 재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 (적용배제) 이 고시는 농촌진흥청 고시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(재검토기한)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1-1호, 2021. 9. 1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검 사 용 시 료 봉 투

검사용 보관용

1. 비료의 종류 :

2. 수입업체명 :

3.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명 :

4. B/L 번호 :

5. 채취장소 :

6. 채취연월일 :

7. 채취관계인

가) 채취자 : 국립농업과학원 (인)

나) 입회자 : (인)

8. 비 고

국 립 농 업 과 학 원

비고 : 1. 지질 : 크라프트지(평량-80g/m²)
2. 규격 : 가로 25cm, 세로 35cm

(별지 제2호서식)

수입비료 등 위해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

비료의 종류					
도착년월일			모선번호		
수 입 자	상호명				
	주 소				
모집단 수량	산물(톤)			포장물(대)	
모집단 편성	<input type="checkbox"/> 모선번호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일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도착일자			추출대수	
채취장소					
B/L 번호 및 물량					
생산국가					
생산업체				생산일자	
<p>국립농업과학원 고시 「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」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채취자(기관명, 성명) : 국립농업과학원 (서명)</p> <p>입회자(회사명, 성명) : (서명)</p>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